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



---

## 공유재산 공제가입 운영 특정감사 결과 보고

---



감사위원회

## I. 감사실시 개요

### □ 감사 목적

- 공유재산 영조물배상공제, 시설물재해복구 공제 등에 대한 관  
심부족 및 관리소홀로 인한 공제 중복, 불요 또는 과다산정  
등의 점검으로 예산누수 차단

### □ 감사개요

- 대상기관 : 시 전부서,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위탁·보조기관
- 감사기간 : 2017. 7. 3. – 8. 11.
- 감사범위 : 2017년 7월 기준 공제가입 시설물 1,487건
- 감사인원 : 회계감사팀장 외 1인

### □ 감사중점사항

- 공제등록 물건 관리, 중복가입 여부 등 운영실태
- 미사용·멸실·불필요 시설 가입 등 공제가입 적정 여부

## II. 감사결과

### □ 행정상 조치

(단위 : 건)

지적사항				특수 시책	수법 사례	건의 사항	민원 사항
계	시정	주의	현지 (사전조치)				
2	1	-	1	-	-	-	-

## □ 재정상 조치

(단위 : 원)

구 분	회 수	산출 내역	비 고
계	≒ 31,507,350		
본처분	≒ 5,553,890	≒ 31,187,260원 × (65일/365일)	2017.10.27. 기준
현지처분 (사전조치)	≒ 25,953,460	≒ 65,784,820원 × (144일/365일)	2017.8.9. 기준

## □ 신분상 조치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비고
6	-	-	3	3	본처분

## III. 감사결과 처분지시

### □ 처분요구 사항

- 행정상 조치 : 시정 1건
- 재정상 조치 : ≒ 31,507천원(공제조정 잔여기간 분) 회수
- 신분상 조치 : 6명

#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제 목】 공유재산 공제가입 운영 부적정

【부 서 명】 회계과 외 30개 부서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회 수 (공제조정 잔여기간 분)

【지적내용】

## 가. 현 황

○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에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이나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회계과에서는 매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관리·사용하고 있는 공용시설 1,487건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손해배상) 또는 건물·시설물 재해공제(손실보상) 정기등록(신규, 변경, 해지) 신청을 받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 가입하고 2017년 기준 연간 578백만 원을 공제회비로 납부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그러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30개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부서로서 매년 공제가입 시설의 가입내역 적정성을 확인하여 총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공제등록 총괄 운영부서로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매년 말 전 부서에 1,500여 건의 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하면서 다수 부서에서 회신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공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다수의 부존재·미운영 시설, 관리 부서 미지정 시설, 가입 물건 내 중복가입 등에 대하여 다년간 공제비를 지급하였으며, 일부시설은 건물가액이 재산대장 금액과 5~10배의 차이가 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 종합하건데, 위 현황과 같이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한 시설 중 민간위탁 기관 등에 중복 가입 23건, 부존재·미운영 시설 7건, 비위험·민간인 출입 통제시설 25건, 일시 계절성 사업의 연간 가입 2건, 공제액 산정의 기준값 착오 5건 등 총 83건의 시설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가입하여 연간 약 43백만 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였으며,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가입 시설 중 출연기관 등의 중복가입 29건, 건물 및 시설물 등록금액 과다 산정 41건, 부존재·미운영 시설 4건 등 총 75건의 시설에 대한 공제 가입이 부적정 함에도 연간 약 55백만 원의 과다 지출을 발생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별첨: 공제가입 운영 부적정 현황(영조물배상공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 【처분요구】

총무과장, 공공시설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육성과장, 기업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환경보전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시립도서관장,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둔포면장, 신창면장, 온양3동장, 온양6동장,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공제등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  
라며,

## 회계과장은

○ 부적정하게 가입된 영조물배상공제,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시설  
물 157건에 대하여 중복 건의 해지, 건물등록금액 변경 등 시정 조치  
하고 잔여 공제기간에 대하여 전액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같  
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공제등록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  
검토기준 및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